

제34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서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66호) ]



2026.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466 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서초구청장 (스마트도시과)	발의연월일	2026.03.1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충열

## I 제안내용

### 1. 제안이유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마.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바.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안 제7~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02. 02. ~ 2026. 02. 22. (20일)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II

## 검토의견

###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1.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윤리적 위험

-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공공행정, 복지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이끌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편향, 기본권 침해, 불평등 심화와 같은 윤리적 위험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sup>1)</sup>.

1) 세계경제포럼 Global Risks Report 2024; OECD AI Principles 2024; UNDP AI 관련 보고서 2025).

-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윤리·안전·책임성 확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과 행정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AI를 활용할 경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윤리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짐.

## 2. 국제적 기준: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 2021년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채택하여 AI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기본권 존중,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의 확보를 국제 표준 차원에서 제시하고<sup>2)</sup>, 위 권고는 AI가 인간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제협력과 국내 정책입안자 교육 등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적 논의 또한 AI 윤리가 기술혁신과 병행하여 사회적 신뢰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3. 국내 정책·법제 동향

-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정부는 인간 중심 AI 구현을 목표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하여 투명성·안전성·책임성 확보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sup>3)</sup>, 동 전략은 AI가 공공생활에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본법과 중앙정부 권한: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2)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2025.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 2026. 1. 22.)하여 국가 차원의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윤리 원칙 법제화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은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평가 체계 및 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윤리 거버넌스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조율함과 동시에,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국내 AI 윤리 가이드라인:**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권 보호, 다양성 존중, 위험성 예방,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확보, 책임성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sup>4)</sup>, 또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설계 시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음<sup>5)</sup>.

#### 4. 지방정부의 AI 윤리 기반 마련 필요성

- 국가 차원의 법제·정책 프레임워크가 정비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과 주민 권리를 반영한 AI 윤리 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법·정책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현장 적용, 지역주민의 정보권·사생활 보호,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개별 지방정부 차원의 윤리기준과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으로<sup>6)</sup>, 조례를 통해 AI의 도입·운영 시 윤리기준을 명문화하고, 영향평가 및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신뢰받

4)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 연구」, 2025.

6)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5 ;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AI 전략 연구, 2024.

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됨.

## 5. 조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AI 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윤리 기준과 국내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 차원에서 윤리 원칙과 책임 체계를 명문화하고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 신뢰 확보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 안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책임 있는 AI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sup>7)</sup>.
- 이와 같은 방향은 국제사회와 중앙정부의 AI 윤리·거버넌스 정책 기조와 정합성을 가지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AI 정책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sup>8)</sup>.

## ▣ 법적 근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sup>9)</sup>는 “인공지능윤리”를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

7)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2025

8) 국제 AI 윤리·거버넌스 동향 보고서, 2025; 국내 AI 기본법 및 정책 동향, 2025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0.>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리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윤리를 단순한 선언적 가치가 아니라 법률상 개념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본적 개념적 토대를 제공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sup>10)</sup>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한편,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sup>11)</sup>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과,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sup>12)</sup>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짐.

○ 더 나아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1. 20.>

1.~2. 생략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4의2.

5.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관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하고, 그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공개·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sup>13)</sup>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기준·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인공지능윤리와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 등을 제정·개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조례를 통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법은 인공지능윤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윤리기준 제정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 가. 안 제1조(목적)

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규범적 지향과 기본적인 입법 목적을 제시하

13)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는 목적 규정으로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음.

- 특히 본 조항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윤리적 가치가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행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윤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본 조항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환경을 마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인 기술 규제보다는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 수립, 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해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개발”이라는 표현은 문언상 민간 영역의 기술 개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상으로는 구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및 행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안 제1조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체계상 타당한 목적 규정으로 평가됨.

## 나. 안 제2조(정의)

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li> <li>2.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li> </ol>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이후 각 조문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규정으로, 조례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항이고, 특히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윤리”는 본 조례의 규율 대상과 가치지향을 형성하는 중심 개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입법기술상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임.
- 제1호의 “인공지능”을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 이해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 기술 방식이나 알고리즘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이고,
- 제2호는 “인공지능윤리”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

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과 규범적 가치의 기준을 제시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며,

- 따라서 안 제2조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윤리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상 통일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전반에서 인공지능 정책의 적용 범위와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 정 안
<p><b>제3조(구청장의 책무)</b>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p> <p>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 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안 제3조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규정으로, 선언적 목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책적·행정적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본 조항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구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제1항은 구청장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 및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술 진흥 자체보다는 인간 중심의 가치와 주민 보호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제2조의 인공지능윤리 정의와도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으로 보이고, 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표현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의무라기보다는 정책적·윤리적 책무를 선언하는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제2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진흥하기 위하여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홍보·자율규제 지원 등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상위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와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이를 종합하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을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의 정책적 책임 주체로 명확히 하여 조례의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서 체계상 타당하며, 인간 중심 가치와 공익성 확보라는 조례의 기본 방향을 구체적 행정책무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과 관련한 조례 상호 간 적용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반적 준용·우선 적용 규정으로서, 법체계의 통일성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보이고, 즉,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간 규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기능을 수행함.
- 이는 동일 자치단체 내 복수의 조례가 유사·관련 사항을 규율할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 정비 규정으로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행정 전 분야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기술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특히 개인정보 보호, 지능정보화, 행정 데이터 활용 등 개별 분야 조례와의 관계에서 해석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본 조항은 일반적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자치법규 체계 내에서 재확인하는 선언적·보충적 성격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안 제4조는 조례 상호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와 기능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 제5조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3년 단위 기본계획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체계적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본 조례상의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으로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신뢰 기반 조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은 인공지능 윤리 분야에 한정된 연도별 실행계획으로 보여짐.
- 이러한 점에서 본 조항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윤리 정책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위 계획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을 구분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구조로 볼 수 있고, 특히 시행 계획에 추진 목표, 주요 과제 및 교육·홍보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은 윤리 기반 조성 정책을 실질적 사업 단위로 연결하려는 취지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본 조례에서 이미 신뢰 기반 조성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상의 시행계획은 그 내용과 범위가 기본계획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기본계획의 세부 이행계획 또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전제로 할 때, 안 제5조는 상위 계획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윤리 정책의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체계상 타당성이 인정됨.

## 바. 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 정 안
<p><b>제6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b>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공지능윤리 정책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li> <li>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구민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li> <li>4.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검토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p>

- 안 제6조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자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1항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인공지능윤리 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서비스, 복지정책, 안전관리 등 공공행정 전반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전



문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윤리적 기준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임.

- 한편,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 설치될 가능성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기술적 장치라 할 것임.
-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본 조례안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특히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준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자문 기능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 범위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두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위원회 내에 윤리 관련 자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안 제6조는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

고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체계를 마련하려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 안 제7조(지원사업)

제 정 안
<p><b>제7조(지원사업)</b>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과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li> <li>2.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li> <li>3. 인공지능의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li> <li>4.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li> <li>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안 제7조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조례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과 목표를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공지능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서비스, 복지정책, 안전관리 등 공공행정 전반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윤리적 기준

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윤리 교육, 위험 관리 및 영향 평가 등은 최근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책임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 또는 신뢰할수 있는 인공지능(Trusrworthy AI)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투명성 및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도모하는 규정으로서 그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관리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의 공익성 및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 아울러 제2항과 같이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은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행정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전문기관 및 사회 각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는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장치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안 제7조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및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아.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안 제8조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 선언적·지원적 성격의 조항으로 판단되고, 본 조문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및 확산 정책이 행정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공공·민간·학계·연구부문 간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조문에서 사용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구청장에게 협력 추진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임의규정으로, 정책 환경과 행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기관과의 협력을 의무화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협력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인공지능 정책의 특성상 요구되는 다층적·융합적 협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본 조문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및 타 기관과의 협력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정책 등 관련 조례에서도 유사한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례와의 정합성도 인정되며, 문언 또한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없어 보임.

-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는 안 제8조는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외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으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제7조의 지원사업 규정과 연계되어 조례 전반의 정책 집행 가능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됨.

##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기준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적 시도라 할 것이고,
- 최근 인공지능은 행정서비스 제공, 복지 정책 운영, 도시 관리 및 안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정책 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과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국제사회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윤리적 기준과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채택, OECD 인공지능 원칙 제시 등 다양한 국제 규범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과 정책 추진 체계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안의 내용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추진 체계, 사업 지원 및 협력 기반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 다만 인공지능 정책은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가 빠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가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운영이나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존 위원회 및 정책 기구와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윤리적 기준과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체계 및 규정 내용 또한 상위 법령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